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오중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8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 오중석, 이은주 의원 (2명)

찬 성 자 : 이영실, 우형찬, 이승미, 정진철,
홍성룡, 송아량, 송도호, 김상훈,
김태호, 추승우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영유아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학버스 안전을 시설 운영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며,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함
- 이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향상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안전운행 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전사항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 등의 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시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가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 라. 통학버스 이용 영유아의 안전 향상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마.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 바.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감독 및 자문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향상을 위해 시장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및 「영유아보육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제2호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현황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실태조사
4.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또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을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 사업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안 제6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의거 2014년부터 도로교통공단이 무료로 추진하고 있는 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첨부자료)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99,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99,000천원으로 연평균 19,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동안 어린이통학버스가 증감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2019년 1월 기준 서울시 어린이집(6,012개소)에서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총 1,538대임(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는 기 설치('18)된 통학차량 제외하고 비용산출하였음

※ 2018년 9-10월 단년도 사업으로 국비50%, 시비50%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장치 설치하였으며 1,538대 중 1,468대 신청하여 추진 중. 미신청70대와 신규운행(30대 가정) 기준으로 비용산출.

- 안 제8조제1호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어린이 미하차 경보시스템(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3가지 방식(①벨방식, ②NFC(무선통신장치), ③비콘(근거리 무선통신 기기), 첨부자료 참고)이 있으나, '18년도 기추진사업과 동일하게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8조제2호의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의 의무교육을 격년 이수하고 (비용발생 없음),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해에만 연 1회 이수하는 것으로 가정함(매해 총1,538명의 절반인 770명이 10회에 나눠서 교육 이수)
- 안 제9조에 따른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 15명으로 가정하고, 그 중 서울특별시 소속 1명을 제외하고, 14명은 외부 위원으로 가정함
- ※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운영비는 서울특별시 해당부서의 '국공립확충위원회 운영'의 운영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안 제9조에 통학버스 안전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가정(정기 회 2회, 임시회 2회 포함, 연간 총 4회 기준)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99,000천원(연평균 19,800천원)
 -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비 + 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운영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8조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제1호)	20,000	-	-	-	-	20,000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제2호)	9,200	9,200	9,200	9,200	9,200	46,000
	제9조	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운영비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소계(b)	35,800	15,800	15,800	15,800	15,800	99,000	
	□총 비용(b-a)	35,800	15,800	15,800	15,800	15,800	99,000	

-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 20,000천원
 - 산출방식 : '18년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보호장치 전면설치시 미신청한 차량 및 전면설치 이후 신규운행하는 차량에

안전장치 구입 지원('18년 담당부서 기추진사업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대20만원 지원)

- 2020년 구입비 = 100개소 × 200천원 = 20,000천원

○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 46,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비용 : 연간 강사비 + 연간 교육운영비
= 2,200천원 + 7,000천원
= 9,200천원

· 연간 강사비 : 220,000원 × 10회 = 2,200천원

(2018 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기준, 일반2급, 2시간 기준)

· 연간 교육운영비 : 700,000원 × 10회 = 7,000천원(다과, 문구, 교육자료 등)

○ 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운영비 ≙ 33,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통학버스안전위원회운영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운영비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업무추진비
= 5,600천원 + 1,000천원
= 6,60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 × 14명 × 4회 = 5,6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은 서울특별시 해당부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운영형태가 유사한 위원회 '국공립확충위원회 운영'의 위원회참석수당 10만원(을 준용하였고¹⁾),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1명은 참석수당 지급 인원에서 제외

· 연간 위원회 회의운영 물품구입 및 업무추진비 : 1,000천원

1) '2019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 위원회 참석수당' 에 따른 기본료가 10만원임(2시간 이내)

<참고 :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현황>

(단위 : 개소, 대)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협동	민간	가정
어린이집	6,012	1,495	27	107	290	1,732	2,361
통학차량	1,538	48	4	43	15	1,230	198

※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19.1월 기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4
e-mail : liz1998@seoul.go.kr